

보일러 제조업체의 PL 대응 전략⁽¹⁾

1. 소비자보호법상의 '안전' 관련 규정

소비자보호법은 모법(8장 54조 부칙)과 동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확보' 및 '위해의 방지' 관련 부문으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제3장 15조) 등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1장 총칙 제3조)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알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 기타 = '선택할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제2장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진다(제5조)

● 위해의 방지

(1)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기준을 정해야 한다'

- ① 물품 및 용역의 성분 함량 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 ② 물품 및 용역의 사용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라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 ③ 기타 위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고시.

(3) 중앙행정기관의 장-사업자의 제1항 기준 준수여부 정기적 검사 또는 조사.

(4) 재정경제원장관-필요한 경우 각종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행정기관 소비자 단체 병원 학원

등을 위해 정보기관으로 지정·운영(시행령 제8조)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광고기준 제정', '거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구제'

(3) 사업자의 의무

- 위해의 방지= 사업자는 '제6조 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안 됨. (제3장 제16조)

- 표시(광고)기준 준수 의무 (제8조 제1항) 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의무 (제3장 제17조)

- 기타= 거래의 적정화(부당판매행위 금지)의 준수(제10조 제2항) 국가·지자체의 소비자보호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제3장 제15조)

2.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또는 유통업자 수입업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원천적인 책임을 물어 포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률임. 영문으로는 'The Law concerned Product Liability' (약칭 PL법)로 표기함.

(1) 법체계

1) 인간존중생명존중의 법체계

제조물책임법은 근대법체계의 발전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두된 '인간존중과 생명중심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서 소비자주권의 우위에 입각하여 출범한 전진적인 선진 법체계임.

2) 민사특별법적 성격

산업화 이전= 매수인 책임원칙(상인과 소비자간)

공업화사회= 매도인 책임원칙(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

현대사회 =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거쳐 출하되고 있는 제조물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의 안전을 거의 전적으로 제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 사전적 위험 예견은 기대할 수 없음.

제조물책임법은 바로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제품 결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민사책임법의 법리를 수정하는 민사특별법적 성격을 띄고 태어남.

3) 현행법상의 한계

- 소비자입장에서 제조자의 과실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 설령 과실책임을 입증한다 해도 현행 민사책임체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 채무 불이행책임 역시 소비자와 제조자는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고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경우에도 제품의 기능 성능을 뛰어넘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며, 확대손해에 적용 가능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법리상 가해자



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는 법리상 매우 어려움.

4) 입증책임의 전환

PL법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제조상의 과실'을 입증해야함. 그러나 PL법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결함만을 책임 요건으로 하여 제품결함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5) 하자과 결함

하자= 상품으로서의 적합성 또는 품질보증 차원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함= 제품을 기획 개발 제조과정상의 잘못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라면= 함량부족(하자)/ 비식용유지 사용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결함)

- TV = 화면 불량(하자)/브라운관 폭발(결함)

- 아이스크림= 이물질(하자)/ 이취(결함)

6)취약품목들

의약품/ 식품/ 고가연성 섬유류/ 가전제품/ 자동차/ 화장품/ 화학제/ 보행기/ 잔디 깎기 날 등 철강관련제품/ 건강보조식품/ 전기가스/ 선박 스크류

3. PL법 재정 배경

(1) 소비자의 안전의식 고조

가스 폭발, 백화점 붕괴, 라면 우지파동, 예방접종 사고, 아동급식 식중독, 녹즙기 손가락 절단, 건강식품 부작용, 미백화장품 후유증 등을 계기로 적정한 피해보상이 소비자사회의 중심과제로 대두됨.

(2) '공급자 우위' → '소비자 우위'로의 국면

전환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수출상품은 상대국의 까다로운 PL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수입상품이 국내에 상륙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것임. 이처럼 소비자의 불이익이 불가피한 '불균형' 현상의 조속한 시정인 요구됨

(3) 범세계적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운데 범세계적인 게임·룰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며, 중소기업 보호는 더 이상 실질적인 명분이 될 수 없음.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그간 OECD 등으로부터 입법화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4. 제조물책임법의 쟁점들

입법화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문은 다음의 6가지임.

(1) 제조물의 범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동산의 특수성 감안- 단행법 처리)

S/W 등 정보상품(별도의 법률로 규제)

미가공 농수축산물(영리목적이라 할지라도 농어민의 위험분산능력과 배상능력 부족 및 책임소재 불분명)

의약품 등의 포함 여부

(2) 결함의 개념과 종류 설정

'개발위험' (development risk)에 대한 제조자의 항변권 문제

의약품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작용 문제에 대한 항변권 불인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가 결함이다’

결함 유무 판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품의 성상과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

‘예상 가능한 합리적인 사용기간’, ‘유통된 시기’ 등임

기업이 상품유통시점에서의 과학기술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항변권임- 건강과 직결된 가공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각국의 공통된 흐름임.

(3) 결함의 존재시점

인과관계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출고당시’, ‘구입시점’, ‘결함 발견시점’, ‘장기간 사용중’-이 가운데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는 배상책임과 배상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임.

소비자로서는 구입 당시에는 결함이 없더라도 오랜 사용 후에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그 시기가 언제이든 결함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손해 배상을 받기를 원할 것임.

(4)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지니는 테마임.

PL법 환경에서는 소비자는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면제 받는 대신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과 그 결함으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받게 됨.

그러나 소비자는 사업자와는 달리 제품지식과 기술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증거제출제도의 채택’ 과 ‘감정인에의 조사권 부여’ 등이 있으나 대세는 소비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과 추정효과’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사업자가 역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논리에 대해 사업자로서는 거센 반발을 보일 것이 자명하나, PL법이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입법화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소비자 우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임

(5) 책임의 주체

제조물 결함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이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임.

일차적인 책임은 완성품 제조업자에게 있다지만 제품생산과 유통과정이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원재료공급업자 부품제조업자 제품설계자 수입업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추후 문제는 이들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를 통해 정리할 문제임.



(6) 구체절차와 해결기구의 확충

PL법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가리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책임의 이행과 분쟁해결 수단 확보방안 등에 있어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 제조물피해 전담 해결기구설립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절차가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또한 동일 내용의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법에 제소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의 제정이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경우 수반될 수도 있는 가격 인상 억제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5. 국내외 각국의 입법동향

(1) 미국

이미 1963년도에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과실책임과 품질보증책임 및 엄격책임 이론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채택한 후 70년대 들어 각주가 이를 더욱 발전시켜 관례법으로 정착됨.

과실책임의 경우 일정조건에서의 사실추정원칙이 인정되고 있어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과실책임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이 법리를 더욱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고,

보증책임의 경우 기대수준의 안전성 결여를 명시적 묵시적 위반으로 보고 그 책임을 묻고 있으며,

엄격책임 역시 오늘날의 많은 제품들이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품결함 입증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나가고 있음.

미국에서는 PL소송의 경우 소비자로서는 착수금부담 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해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액의 1/3을 보수로 챙김) 소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PL소송 절대건수는 연간 전체소송 1800만 건에 견주면 30만 건(1.7%)에 지나지 않으나 PL소송에 의한 직접비용은 '징벌적 성격의 무한책임 손해배상금 부과' 로 인해 연간 800억 달러,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억 달러에 달함. 87년 이후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자성으로 점차 수그러드는 수준임.

(2) 유럽

지난 1968년에 EU를 중심으로 역내 시장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경쟁조건과 소비자보호 수준의 동일화를 위해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 후 17년간의 논의 끝에 1985년 'EU통일지침' 이 마련된 이래 역내 국가 대부분이 입법화함

그러나 국가별로 입법내용은

- ① 미가공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등 7개국은 적용/ 기타국가는 부적용)
- ② 개발위험(development risk)에 대한 제조업자의 항변권 인정 여부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배척/ 독일 스페인= 의약품 등 한정된 제품에 국한하여 배척)
- ③ 동일결함에 기인한 인적손해 책임한도액 설정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함. (독일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5개국만 동조)

소송제기가 미국처럼 쉽지 않아 사회적 부작용

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님. (EU형의 PL법은 미국과는 달리 산업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소송제기에 필요로 하는 제조건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되어있음)

(3) 일본

- 일본의 경우 PL법이 발효된 것은 1995년 7월. 그러나 구미에 비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때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판이 일고 있음

- ① 전기 등 무형의 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 ② 판매자는 책임주체가 되지 아니하며
- ③ 제품 결함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항변권을 인정해주고 있음
- ④ 그리고 결함의 존재시점을 유통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추정규정을 두고있지 않은데다
- ⑤ 확대손해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매우 한정적 성격을 띄고 있음.

일본은 미국에 비해 변호사 수도

- 1) 1/50 수준(약 1만 6천명)이고
- 2) 배심재판 제도가 아니며
- 3) 성공보수제가 인정되지 않음
- 4) 이밖에 사법당국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와 '소비자 보호'의 필연성 사이에서 조화와 형평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PL법 고유의 영역이 크게 훼손됐음.

(4) 기타국가

기타국가로는 브라질 호주 등이 EU형으로 입

법화했으며, 공산권국가로는 러시아(소비에트연방)와 헝가리 중국 등이, 개도국으로는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이미 입법을 완료했음.

뉴질랜드는 PL사고와 보상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켜 발전시켜오고 있음.

(5)우리 나라

국내의 경우 1982년 2월19일 당시 김순규 국회의원에 의해 최초의 제조물책임법안이 발의됐었고, 그 이후 1989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입법을 제안했었으나, 재계의 이해에 얽혀 뒷전으로 밀려났었음. 그러나 이제는 '해외제국의 경쟁적인 입법화 동향과 '개방화시대의 기업현실' '소비자 피해규모의 확대추세'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뒤늦게 입법화됨.

- 그간 국내에서는 '정부의 의지'와 '산업계의 수용태세 미비' 및 '소비자사회의 이익'이 3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연되어 PL법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유독 후진국군에 머물러 왔음. 그러나 뒤늦게 법제화되기도 성숙된 사회분위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법 운용'이 될 우려가 없지 않음

법제화의 필수요건은 법세계적으로 공통된 책임·롤을 담는 일임. 법 운용이 미흡할 경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을 국내에 상륙시키고도 법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기업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될 우려가 없지 않음

